

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11. 18. 제천시장
나. 회부일자 : 2008. 11. 20.
다. 상정일자 : 2008. 11. 25.(제154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박문수)

가. 제안사유

- 지방세 감면대상 구체화, 근거법령 변경등 「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. 9. 24, 2008. 10. 9 시달됨에 따라
- 현행 조례를 표준안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취득세·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구체화 함(안 제2조제2항및제3조제1항)
-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대상 중 일부 삭제하고, 근거법령 및 일부용어 수정(안 제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조 제2항)
- 특별·광역시 지역 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60㎡이하의 임대주택까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지역 간 형평성 제고
(안 제12조제1항제2호및제2항제2호)
- 「임대주택법」 및 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인용주문 정비
(안 제12조제1항제호 및 같은조 제2항제1호개정)
-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 조문 수정(안 제22조)

- 아파트형공장 감면 제외부동산 범위 구체화로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조문 수정 및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조례 중 일부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별도 신설
(안 제13조제2항및3항삭제, 제14조의2 제1항, 제2항개정)
-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
(안제8조의3호, 제17조의3호 및 제29조 개정)
- 지방세법 제180조(정의)등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혼란 방지 지방세법 체계화로 '주거용 부동산'을 '주택'으로 일괄정비(안 제20조 개정)
- 법률명칭 변경 및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 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 대상명확화(안 제24조)
-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 규정(재산세 분리과세)에 따라 향교 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 정비(안 제31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석윤)

- 지방세법 제7조(공익상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) 제2 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,
- 지방세법 제9조(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)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,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.
-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대상의 구체화, 근거법령의 변경등 지방 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 9월 24일, 2008년 10월 9일 시달됨에 따라 제천시세 감면조례를 표준안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행정적 타당성이 있음.

-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8년 10월 23일 입법예고하였으며,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 하였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“없음”

5. 소수의견

“없음”

6. 토론효지

“없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